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4월 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임인규

가. 제안이유

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」에 반영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상(안 제5조, 제7조)
- 2)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0조 및 제12조)
- 3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를 현재의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을 반영, 세율을 현실화하여 등록면허세의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

-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「지방세법」 제28조를 근거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100% 인상하고(안 제5조), 「지방세법」 제34조를 근거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 종별 50% 일괄 인상하였으며(안 제7조), “법 제13조 제3항”을 “법 제13조제5항”으로 변경하고(안 제10조), 「지방세법」 제115조를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“5만원”에서 “10만원”으로 반영(안 제12조)하는 등
-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개정된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정비하고, 그 외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,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